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
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6. 6. 2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 이유

-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범명 및 근거항목 변경과 대형 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규칙에서 규정하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“영등포구 홈페이지” 및 “전자지불제도 활용” 추가(안제8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)
-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기준을 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,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” 을 “영 제2조 제7호, 규칙 제8조 별표4” 규정을 적용(안 제10조 제2항)
- 특수규격봉투의 색을 노랑색으로 지정(안제16조)
- 대형폐기물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정(안제27조 제1항)
-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(안제27조의2)
-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(안제31조 제1항)
 - 생활보호법시행령 ⇨ 국민기초생활보장법
 -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-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(안제32조 및 제32조의 2)
- 「별표1」(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)에 폐형광등, 페스티로폼 등의 항목추가, 「별표5」의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개정, 「별표7」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「별표8」의 무단투기자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
- 별지8,9,10,11 (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)개정

□ 관련 법규

- 폐기물관리법 · 같은법시행령 · 같은법시행규칙

□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개정

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 법령 및 근거항목을 변경하고,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하며,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
- 안제8조 및 제29조에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법을 기존의 동사무소 신고와 병행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,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(인증기 사용)또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전자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,

- 안제27조에는 우리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열거된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은 29개 품목 43개 규격으로 되어 있어 이를 108개 품목 168개 규격으로 배출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 하여 수수료 부과에 합리적을 기하고자 한 것이며,
- 안제31조에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수정하였고,
- 안제32조 과태료 부과기준 14 가항에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서울특별시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3만원으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.
- 그리고, 안제32조 및 제32조의 2에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이 남 식